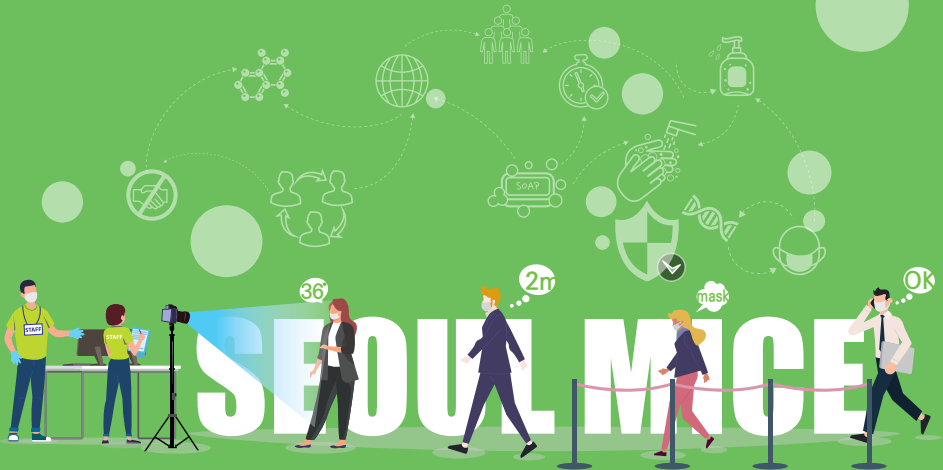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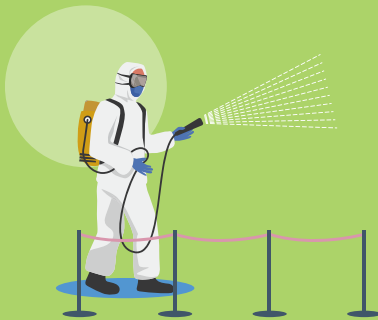


# 서울 개최 MICE 행사 감염병 대응 안전 운영 안내서



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 동향 상황에 따라  
지속해서 수정·보완 될 수 있습니다.

## 서울 개최 MICE 행사 감염병 대응 안전 운영 안내서



본 안내서는 서울에서 MICE 행사 개최 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 운영 지침으로, 국제회의 및 전시회 등을 기획·운영하는 주최기관과 행사장에서 행사 기간 및 성격, 특성, 참가자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의 내용은 현재까지 배포된 정부 지침 사항 및 국제보건기구(WHO) 권고 사항,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특정한 행사 개최 사례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본 안내서는 관광·MICE 업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및 검수 과정을 거쳐 작성하였으며, 이후 MICE 행사 개최 시 관리 및 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해서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본 안내서가 MICE 행사 개최 준비 및 현장 진행, 종료 단계에서 참고가 되길 바라며, 본문을 활용하여 책자 및 기타 홍보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경우 서울관광재단의 사전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

PART 1	1. 배경 및 목적	06
—		
기본 개요	2. 기본 방향	06
	3. 적용 대상 및 범위	08
	4. 안전관리 및 대응 체계	09

---

PART 2	1. 행사 계획(준비) 단계	16
—		
MICE 행사 운영 단계별 안내	2. 행사 개최(진행) 단계	20
	가. 공통 사항	
	나. 등록 데스크 운영	
	다. 국제회의 진행	
	라. 전시회 진행	
	마. 전시회 바이어-셀러 상담	
	바.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 방안	
	3. 행사 종료 단계	41

---

PART 3	붙임 1. 서울 MICE 행사 점검표(주최자/행사 수행사용)	46
부록	붙임 2. 서울 MICE 행사 점검표(행사장 운영사용)	48
	붙임 2-1. 행사장 방역수칙 준수 이행 점검표	
	붙임 2-2. 행사장 일일 방역 일지	
	붙임 3. 서울 MICE 행사 점검표(참가사용)	52
	붙임 4. '코로나 19 감염증' 및 감염병 의심자 정의	53
	붙임 5. 감염병 예방 개인방역 5대 중요 수칙	54
	붙임 6. 해외입국자 참가 절차 및 관리 방안	55
	붙임 7. 확진·의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시 행동요령	60
	붙임 8.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연락처	61
붙임 9.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연락처	62	
PART 4		65
—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 PART 1



## 기본 개요

1. 배경 및 목적	06
2. 기본 방향	06
3. 적용 대상 및 범위	08
4. 안전 관리 및 대응 체계	09

## 1. 배경 및 목적

- 본 안내서는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서울에서 MICE 행사 개최 시 주최기관과 관계자<sup>1</sup>들이 행사 계획/개최/종료 단계별로 대응 및 조치해야 할 사항과 환자 발생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
- 또한, 서울에서 MICE 행사 개최 시 주최기관과 관계자, 참가자들이 지켜야 할 지침을 정리

## 2. 기본 방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1. 7. 1.)에 따라 단계별 특정 인원 이상의 모임·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를 거쳐야 하며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 됨(별도 해제시까지), 불가피하게 MICE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에 따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그 외 세부 사항은 「생활 속 거리 두기 개편\_시설별 주요 방역 수칙 (2021. 7. 1)」 및 본 안내서를 준용하여 추진
- 다만, ① MICE 행사 주최기관이 준비 기간 및 행사 과정 중 방역 조치 시행이 곤란하고 ② 다수의 취약계층<sup>2</sup>을 대상으로 ③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는 연기 또는 대상자를 축소하는 등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비대면으로 접근 제어가 가능한 장치 및 가상현실 공간(버추얼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행사 등 최신 IT 기술 적용을 권고  
\* QR코드를 활용한 출입자 관리 시스템(전자출입명부), 비접촉식 참가자 무인 등록 시스템, 비대면 온라인 화상 회의 플랫폼 활용 등
- 감염병 확산 위험이 늘 남아 있는 만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 대책본부 등 정부의 대응 방침 및 관리지침을 실시간 확인하고 감염병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여 개최 계획 수립 및 진행 권고

1 행사장 운영자(장소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 국제회의 기획 및 운영사(PCO), 전시회 기획 및 운영사(PEO) 등 행사를 준비하는 이해관계자

2 영유아,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당뇨병·심부전·만성 호흡기 질환·만성신부전·암 환자) 등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및 기본방역수칙]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1. 8.)

구분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	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 금지
개념	통상적인 방역·의료 대응 여력 이하 환자 발생	지역 방역·의료 대응 한계, 권역·중앙의 협조 필요	권역 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의료 자원 동원 필요	전국적 방역·의료 체계 한계 도달
적용지역	시군구, 시도, 권역	시군구, 시도, 권역	시군구, 시도, 권역	권역 또는 전국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종대본	시군구, 시도, 종대본	시군구, 시도, 종대본	종대본
기준	인구 10만 명 당 1명 미만 <small>(주간 평균)</small>	인구 10만 명 당 1명 이상 <small>(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small>	인구 10만 명 당 2명 이상 <small>(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small>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인구 10만 명 당 4명 이상 <small>(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small>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 전국: 500명 미만 ▶ 수도권: 250명 미만 ▶ 인구 300만 지자체 : 3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 수도권: 250명 이상 ▶ 인구 300만 지자체 : 3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 수도권: 500명 이상 ▶ 인구 300만 지자체 : 6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 수도권: 1,000명 이상 ▶ 인구 300만 지자체 : 120명 이상
대응 개요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시설면적 6㎡ 당 1명 <small>*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small>		
전시회 · 박람회	시설면적 4㎡ 당 1명 <small>*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small>	시설면적 6㎡ 당 1명 <small>*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small>	시설면적 6㎡ 당 1명 <small>*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자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li> <li>▶ 사전 예약제 운영 (의무)</li> </ul>	
국제회의 · 학술행사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li> <li>-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간 2m 거리 두기</li> <li>▶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가 아닌 학술행사*는 아래 수칙 추가 적용</li> </ul>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1m 거리 두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 두기	<table border="1"> <tr> <td>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인까지 참여가능</td> <td>49인까지 참여 가능 (인원 나누기 금지)</td> </tr> </table>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인까지 참여가능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인까지 참여가능	49인까지 참여 가능 (인원 나누기 금지)			
행사·집회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100명 이상 금지	50명 이상 금지	
			금지(1인 시위 제외)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

\*학술행사: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 (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 (별도수칙 적용)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가 아닌 별도의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 음악 공연을 포함한 페스티벌,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로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단계부터 최대 수용인원 5천 명까지 허용 (예) 야외에서 콘서트 개최 시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 적용, 방역 관리

※ (예외적용)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거나,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기업의 경영 활동 및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모임·행사 (예) 기업 정기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3. 적용 대상 및 범위

#### 1) 적용 대상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한 국제회의를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이 서울에서 개최하는 경우

#### | 국제회의 종류 및 규모 |

1.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고,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이며,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또는 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이며,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한 전시회를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이 서울에서 개최하는 경우

#### | 전시회 종류 및 규모 |

1. 「국제박람회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서 승인한 박람회
2.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0명 이상의 외국인 구매자가 참가 등록한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
3.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개 이상의 전시 부스를 갖춘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로서 전시주최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 기타 중소규모의 국제회의로서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인 회의를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이 서울에서 개최하는 경우

※ 동호회, 팬클럽, 종교 관련 단체 회의 및 축제, 공연 등 제외

#### 2) 적용 범위

- 감염병 관련 상황 안정 시까지 적용하며, 행사 주최기관에서 방역 대책 수립·시행에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에 문의

## 4. 안전관리 및 대응 체계

### 1) 감염병 대응 사전 조치사항

#### ■ 감염병 위험평가 시행 및 대응계획 수립

- 감염병 발생의 세부적인 위험평가를 시행하여 공중보건 및 응급상황 대응 방안 수립

#### | 행사 진행 시 감염병 위험평가 요인 |

(중앙방역대책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20.2월)

- ① 행사 기간 및 참여 인원
- ② 참가자 밀집도 및 참가자 접촉 활동 여부(옥외/실내 등), 참가자의 사전/현장 등록 여부, 참가자의 잠재적 노출 가능성
- ③ 행사 개최장소 및 자치구 내 관계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감염 예방 및 관리, 의료기관 및 격리, 치료 시설 등)

- 대응계획은 반드시 모든 관계기관<sup>3</sup> 합동으로 수립하고 점검
- 각 관계기관 담당자 지정 및 비상 연락망 구축
  - 행사 조직 내 '감염병 대응 및 방역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행사 관련 종사자와 참가자, 기타 방문객 등 의심 증상자의 신고 접수, 시설 출입 시 사전위생 관리 책임 부여
  - 핫라인과 같은 적절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정보 제공, 접촉자 추적조사 및 보고에 활용
-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 수립
  - (보고체계) 행사 주최기관 → 보건소 → 서울시 집단감염 신속대응단
- 의심환자 발생 대비 임시 격리공간, 의료시설 및 인적·물적 자원 확보
  - 주요 행사장소 및 주변 지역 임시 진료 장소 지정 등 검토
  - 행사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개인 보호구(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체온계, 손 소독제 등 물품 확보

<sup>3</sup> 주최 측 행사 담당자와 행사장 운영자(장소 제공자), 관내 보건소, 서울시 혹은 자치구, 인근 선별진료소 그 외 필요 기관(행사 내용에 따라 의료기관, 숙박시설 등 추가)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 조치 시행

- 참가자, 관계자 대상 교육 및 감염 예방 주의 안내
  - 각 관계기관 종사자 대상 감염병 정보 및 예방수칙, 의심환자(유증상자) 발생 시 행동 요령 교육
  - 행사장 출입자 대상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철저 안내
  - 행사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행사장 운영인력 및 기타 출입자에 대한 1일 2회 체온 측정,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
  - 행사장소 내 감염병 예방 주의 안내문 부착

2)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 의심환자 발생 시 행사 조직 내 '감염병 대응 및 방역 관리 담당자'는 담당 보건소 또는 전화상담실(☎02+120, ☎1339)에 즉시 신고
  - 환자 이송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임시 격리공간에 격리
  - 방역당국의 환자 동선 파악에 최대 협조
- 필요한 경우 서울시 집단감염 신속대응단과 행사 지속 여부 결정
  - 방역상 조치, 군중 혼란 등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사를 중단하거나 연기

| 감염병의심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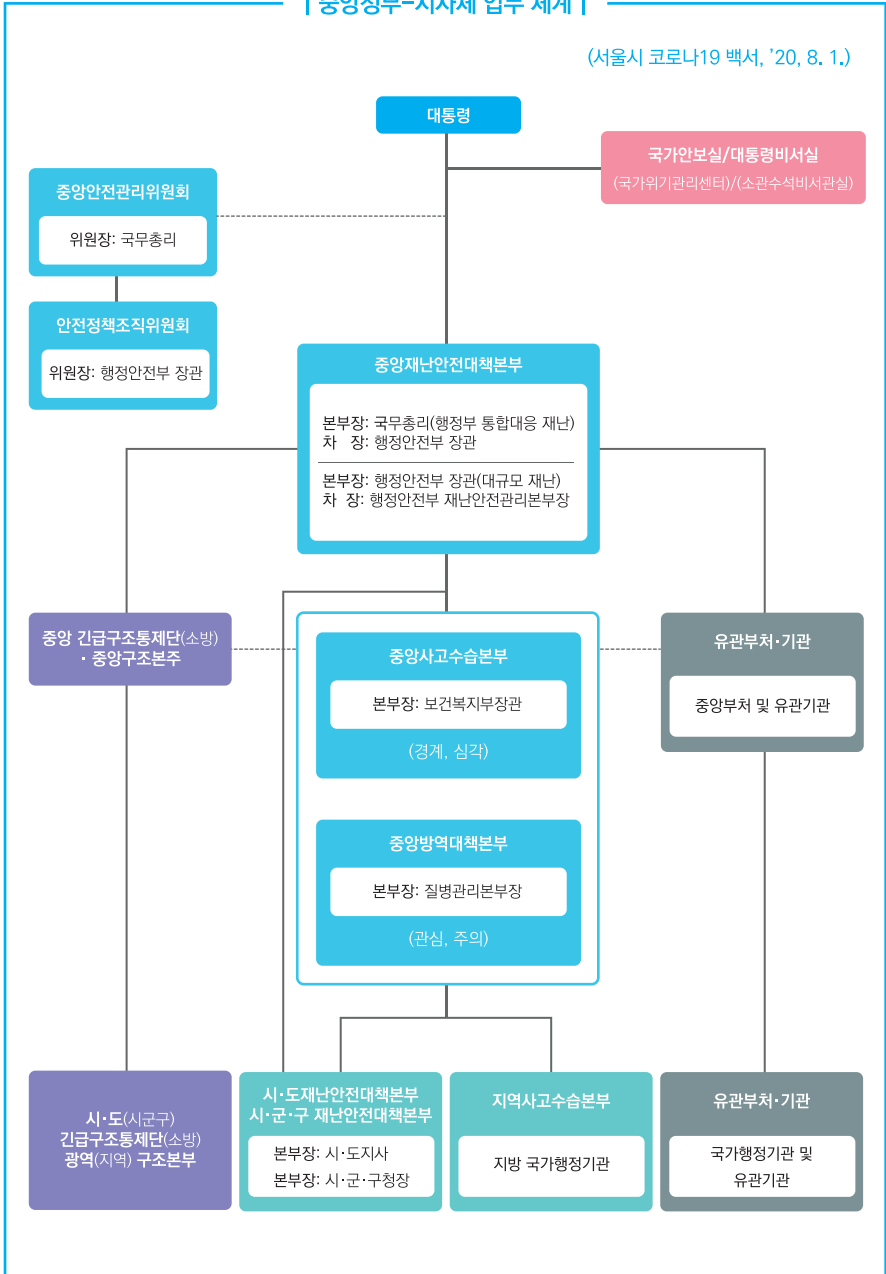
(코로나19 검역 대응 지침 제10-1판, '21.07.05.)

- 감염병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②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r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③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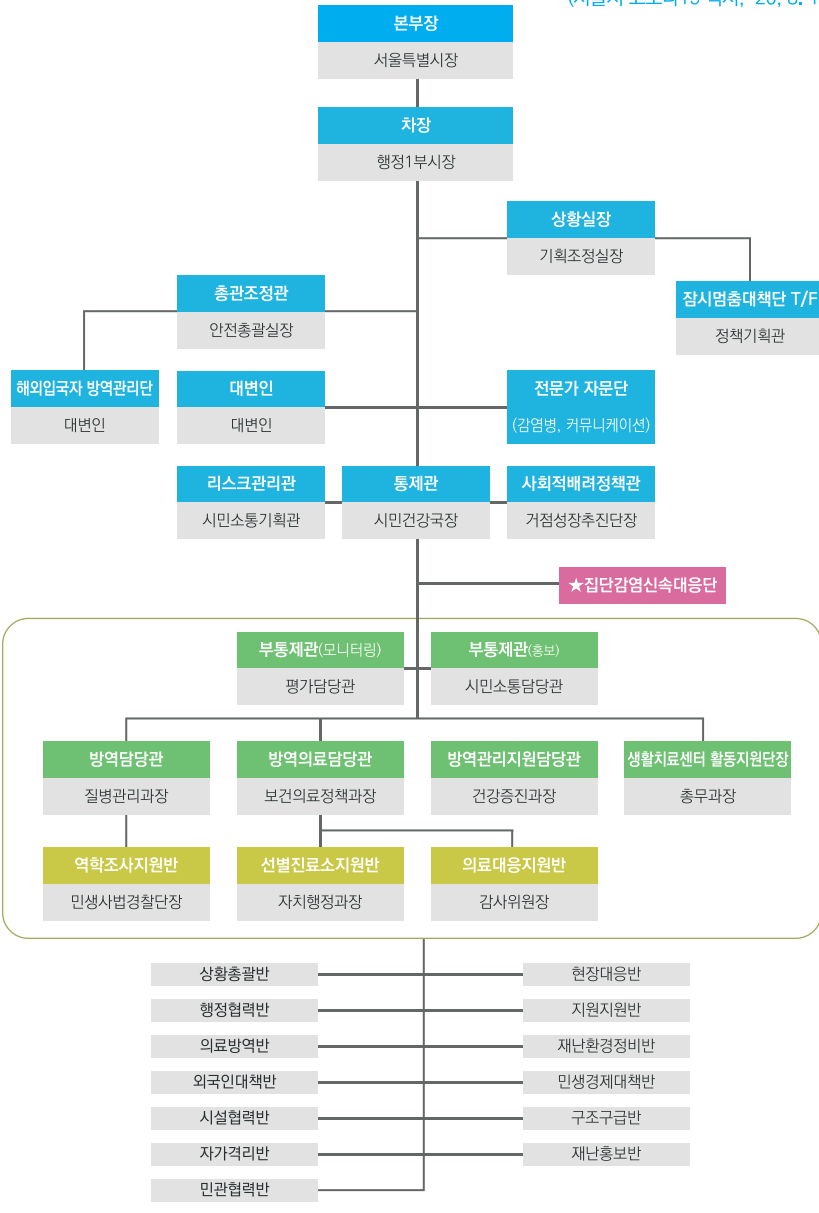
| 중앙정부-지자체 업무 체계 |

(서울시 코로나19 백서, '20, 8. 1.)



**| 서울시 감염병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

(서울시 코로나19 백서, '20, 8. 1.)





# PART 2





# MICE 행사 운영 단계별 안내

---

## 1. 행사 계획(준비) 단계

16

---

## 2. 행사 개최(진행) 단계

20

- 가. 공통 사항
  - 나. 등록 데스크 운영
  - 다. 국제회의 진행
  - 라. 전시회 진행
  - 마. 전시회 바이어-셀러 상담
  - 바.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 방안
- 

## 3. 행사 종료 단계

41

---

## 1. 행사 계획(준비) 단계

### 1) 주최자(행사 수행사)

- 행사개최에 따른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토대로 진행 여부 결정
  -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일회성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
  - 감염병의 감염전파 가능성이 큰 행사<sup>5</sup>는 연기 또는 취소
  - 행사장소 선정 시, 반드시 사전답사를 시행하여 방역 상태와 안전관리에 대해 사전 점검하고, 별도의 격리공간 확보 등 현장 운영 협조 사항 확인
- 불가피하게 행사 진행 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위기 대응계획 수립
  - 주최자-행사 수행사-행사장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의심환자 발생 시 각 기관별 대응 정리

#### [의심환자 발생 시 각 기관별 대응 예시]

행사 주최자 및 수행사	행사장 운영자
- 관내 보건소 신고 - 보건소 안내사항에 따른 제반사항 준수 - 참가자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출입통제	- 격리공간 제공 - 이송차량 신속안내 - 이송 후 즉시 소독 - 격리공간 임시폐쇄

- 비상연락망에 주최측의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행사 관련 종사자나 참가자, 기타 방문객 등의 의심환자의 신고 접수, 시설 출입 시 사전위생 관리 책임 부여
- 행사 참석자 및 행사 진행요원 등 전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보
- 서울시-자치구-보건기관과의 협조체계 확인 및 핫라인 개설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전화상담실(☎02+120 또는 ☎1339)

<sup>5</sup>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실내 및 야외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비밀 전파가 가능한 행위(노래·응원·구호 등)를 하는 행사

■ 행사장 안전 및 참가자 감염병 예방 사전조치 시행

- 시설 내 화장실 등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에 손 세정제(액체비누, 손소독제(알콜 70%이상))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 기침시 사용한 휴지는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 내 휴지 및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방 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dca.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행사 프로그램, 참가자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해 행사장 내 대응 안내문 비치
  - 국제행사 시 영어 및 중국어 등 주요 외국어 대응 안내문 비치
- 감염병의 감염 특성(비말감염)을 고려하여, 행사 내용상 참가자가 밀접 접촉하여 호흡기 전파가 가능한 프로그램 제외
- 출입자 관리를 위한 열화상 카메라, 체온계 등 발열 체크 기기 준비
- 의심환자 발생 시 대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 임시 격리공간 확보 및 체온계, 마스크(KF94등급 이상) 등 방역물품 구비

— | 격리공간 운영 시 점검 사항 | —

(중앙방역대책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20.2.」)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2판, '20.2.26.)

- ① 격리공간 내 밀폐 가능한 문이 있고, 사람의 이동이 적은 독립공간에 조성
- ② 공기에 의한 감염 예방을 위해 공기 순환 장치는 되도록 차단
- ③ 격리공간 운영 시에는 관계자 이외에 출입금지 철저히 준수
- ④ 격리환자가 이송 등 퇴실하는 경우 즉시 방역 및 소독시행
- ⑤ 격리공간 인근 환자 전용 화장실 운영
- ⑥ 격리환자 수용 시 기존 근무직원 재근무 금지



- 행사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담당 보건소로 즉시 이송할 수 있도록 별도 이송 차량(구급차) 및 의료진을 사전 섭외하여 대기

■ 행사 운영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시행

- 행사 운영인력 선발 시 감염병 의심환자 혹은 유증상자 제외



## PART 2.

- 감염병 질병정보 및 감염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등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진행요원 사전 보건교육 시행

### ■ 행사장의 밀집 및 감염 우려를 낮추려는 조치 시행

- 참가자 사전 공지를 통해 아래 사항 해당자는 참가 자제 안내

#### | 참가자 사전 공지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20.2월)

- ① 주요 임상증상(37.5℃ 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손실 또는 폐렴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참가하지 말 것
- ②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은 되도록 참여 자제
- ③ 의심환자, 자가격리 대상자(확진확자 접촉자)는 참여 불가



- 군중의 혼잡도를 최소화하는 운영 계획 수립
  - 참가자 분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시간 조정, 혼잡 시간 및 방문 권장 시간 안내, 행사장 셔틀 차량 운영 시 교통편 증대 등
- 사전등록 참가자에게 행사 시작 14일 전부터 감염병 관련 자가진단을 하도록 안내
- 참가자에게 지속적인 주의 메시지 전달(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등)
- 행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사 혹은 협력사 선정 시, 참여 직원들의 감염병 자가진단, 물품 소독 등 방역지침 이행에 대한 협조사항 확인 및 점검
- 해외 참가자의 국내 입국 시 주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입국 이후 동선 정보 제공 및 자가진단 등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지침 등에 대해 협조 요청

## 2) 행사장 운영자(장소 제공자)

### ■ 협조체계 구축 및 시설 방역관리 철저

- 주최자와 비상연락망 구축 및 위기 대응계획 수립 협조

서울시-자치구-보건기관과의 협조체계 확인 및 핫라인 개설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전화상담실(☎02+120 또는 ☎1339)

- 행사 준비부터 종료 단계까지 방역 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방역담당관’ 지정·운영
- 행사 시작 전, 중, 후 행사장 소독(최소 1일 1회)
- 의심환자 발생 시 대기를 위한 격리공간 제공
- 행사장에 출입하는 모든 운영인력은 항시 마스크 착용
- 주최자와 협의하여 방역 및 안전 대응 물품 준비
  - 손 소독제, 비누, 발열 체크기(체온계), 마스크, 감염병 대응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안내문 등
- 건물 출입자 대상 발열 체크 후 고열(37.5℃ 이상), 기침 등 의심환자 발생 인지 즉시 담당 보건소 신고 및 격리공간 대기 안내
  - 보건소 이송 조치 전까지 의심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는 반드시 마스크(KF94 등급 이상) 착용 및 대화 자제
- 의심환자 발생 시 선별진료소로 신속 이송 지원(이송 후 격리공간은 소독 및 임시폐쇄)
  - ※ 행사의 성격, 참여 인원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상기 공통 조치사항 외에 별도의 강화된 추가 방역 조치 시행

■ 행사장 운영인력 및 종사자 예방 교육 시행

- 행사장 운영인력 선발 시 감염병 의심환자 혹은 유증상자 제외
- 감염병 질병정보 및 감염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등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전 보건교육 시행



## 2. 행사 개최(진행) 단계

### 가. 공통 사항

#### ① 방역 관리 협조체계 점검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역할,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 확보 등 방역 협력체계 점검
- 방역당국 및 관계기관(보건소, 소방서, 의료기관 등) 비상 연락망 유지 및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 ② 행사 운영인력 및 종사자 관리

-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는 행사장에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행사 중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근무 중단 및 격리 후 선별진료소로 이동
- 행사 기간 내내 운영인력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및 감염병 대응 지침 등 반복적으로 교육(최소 1일 1회)
- 모든 행사 관련자(주최자, 행사 수행사, 행사장 운영자, 협력업체 직원, 운영인력 등) 대상 체온 확인 등 증상 여부를 1일 2회 점검  
- 행사 기간 중 전자출입명부 등 자가검진표 작성 및 관리
- 행사장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시간,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이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감염병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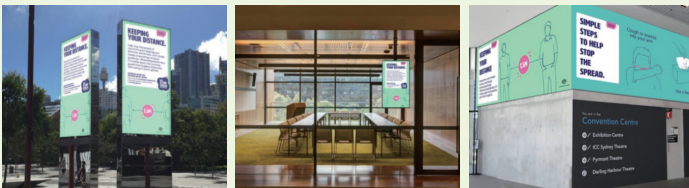
행사장 출입구 발열 체크 및 모바일 문진표 작성안내  
(대한소회기암학회 국제학술대회 IASGO & KSGC 2020, '20.8.21)

### ③ 행사장 시설관리

- 현수막, 문자 전광판, 안내방송 등을 통한 기본 방역수칙 및 개인위생 수칙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행사장 출입구를 달리하여 이용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동선 설정
- 출입구에서 열화상 카메라, 안면인식 체온기, 비접촉 디지털 체온계 등으로 발열 체크
- 손을 씻을 수 있는 장소 안내 및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등 방역 관련 안내문 배포 및 부착
  - 국제행사의 경우 외국어 안내문을 행사장 내 비치 및 부착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④ 행사장 내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 지침 수행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37.5℃ 이상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참가하지 말 것
- 실내 및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휴게실, 카페, 네트워킹 라운지 등 다중 이용공간이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 안내
- 행사 참가 중 마스크 항상 착용 안내
- 행사장 내 출입 및 관람, 착석 시 참가자 간 두 칸(최소 한 칸) 띄우기 또는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관리



행사장 내·외부 방역수칙 및 거리 두기 안내

(ICC SYDNEY EVENTS SAFE OPERATING FRAMEWORK, '20.6.10.)

## 1) 주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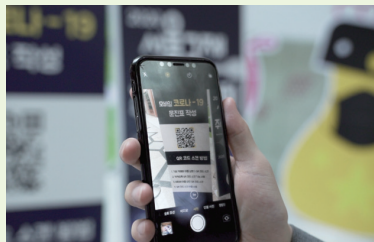
### ① 개최장소 관리

- 참가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구역 및 시간대별 출입 인원 제한 및 동선 관리
  - 사전등록 독려, 행사장 입장가능 인원 산정 및 게시, 안내
- 참가자 입장 시 점검 사항 확인
  - 입장 시 마스크(보건용 권장) 착용 여부, 열화상 카메라 촬영, 체온계에 의한 발열 점검
  - 행사 기간 중 전문 의료 인력 상주 및 비상상황 대비
- 참가자, 운영인력 등 모든 행사장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확인 또는 등록신청서(신원 확인) 제출자(4주 보관 후 폐기)만 출입 허용, 코로나19 임상증상 여부 확인
- 주최자 및 행사 수행사, 행사장 운영인력과 참가자 사이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투명 칸막이 등 설치 고려
- 공용 식수대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공용 시설 철저 관리
- 참가자 체험 공간 수시로 소독 및 환기, 체험시설 및 도구 소독 관리
- 참가자 안전 장비 및 공용 물품 수시 소독
- 참가자용 위생장갑, 손소독제 준비 및 비치

### ② 전체 행사 및 부대이벤트 운영

-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오프라인 행사는 사전등록을 통해 프로그램별 참가 시간, 인원을 제한하여 소규모로 진행
- 참가자 테이블 및 좌석 간격 조정, 투명 칸막이 등 설치
-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 마이크 덮개를 씌우고, 개인마다 마이크 덮개를 새것으로 교체
- 행사 운영인력의 식사 시간은 시차를 두고 운영하여 관계자 간 밀집 최소화
- 참가자가 많아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
- 행사장 방역담당관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현장점검 및 안전상황 확인

- 발연자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높이 70cm 이상, 폭은 테이블 폭과 동일하게 설치
- 경연대회, 설명회 등 협소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부대행사 운영 자제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구호 외치기 등)와 프로그램 최소화
- 준비단계에서 부대행사별 사전등록 절차를 두어 프로그램별 참가자 수 제한
- 참가자 대상 경품 및 기념품 배포를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제공 시 참가자가 직접 가져가도록 안내하거나 장갑을 착용하고 배포
- 불가피하게 시식 공간 운영 시 부스 간 2m 이상 간격 유지,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도록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안내
  - 시식, 시음, 홍보코너에서 발생하는 이쑤시개, 컵, 휴지 등 침이 묻을 수 있는 쓰레기는 타이의 손이 닿지 않게 별도로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음식물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섭취하도록 안내
  - 식사 시 대화 자제 안내
- 식음료 제공 시 개인별 식사 제공하되, 뷔페는 금지하며 식사 전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안내
- 개인 컵·물병·텀블러 등 사용 권장
- 참가자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사 시간을 여유있게 배정
- 일시에 한 장소에 사람이 집중될 수 있는 부대 프로그램 등 자제



전자문진표 작성 및 QR코드 입장 안내  
(2020 서울국제주류박람회, '20.6.12.)

### ③ 참가자 관리

- 사전등록, 예약제 도입으로 참가자가 최대한 분산되도록조정
- 사전·현장 등록 참가자 명단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보 미확인 시 입장불가 안내, 자가진단 체크 필수 안내
  - 전자문진표 작성, 개인 QR코드 입장 등 전자 출입 관리 철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행사장 입장 시 참가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입장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입장하도록 안내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사전등록제 운영)
- 연사 관리 : 초청 연사 자가진단 체크를 의무화하고 참가자와의 접촉 최소화 진행  
1인 마이크 사용(연사별 마이크 덮개 교체), 자리 배치 시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시행
- 공연자·사회자 관리 : 자가진단 체크를 의무화하며 1인 마이크 사용(이용자별 마이크 덮개 교체)
- 해외 거주 연사는 되도록 국내 초청을 자제하고 화상회의(웨비나) 형태의 참여를 권장하되, 불가피하게 초청할 경우, 해외 입국자 참가 절차 및 관리 지침 등에 따라 철저히 조치사항 이행
- 주요 인사 의전 및 수송 : 주요 인사 또는 연사 등 초청자의 의전/수송 진행 시 차량 내 손 소독제 비치, 운전자와 안내자 마스크(보건용 권장) 착용 및 대화 자제 안내
- 숙박 제공은 되도록 자제하되 필요한 경우 1인 1실 배정, 다인실이면 침대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거리 두기를 유지하도록 인원 배정
- 셔틀버스 운영 시, 마스크(보건용 권장) 착용 및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되도록 한 칸씩 띄어 앉도록 안내
- 참가자 수송 : 옆 좌석 비우고 타기, 차량 내 손 소독제 비치, 운전자와 안내자 마스크(보건용 권장) 착용 및 대화자제 안내, 주기적으로 수송차량 내부 소독
- 현장 결제가 있는 경우, 가급적 비대면 전자 결제방식(모바일 페이, QR코드, NFC 카드, 모바일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도록 안내
- 참가자에게 지속적인 주의 메시지 전달(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 참가자가 개인 컵·물병·텀블러 등을 지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 2) 행사장 운영자

### ① 행사장 관리

- 2일 이상 개최되는 행사 시, 종료 후 매일 회의실, 출입구, 손잡이, 화장실, 엘리베이터 버튼 등 방역 소독, 공기 질 측정(2시간 간격), 공조기 15분 간격 시행
- 환기가 원활하도록 행사 프로그램 중 수시로 환기·공조시스템가동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상 작성 및 환기 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 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행사 참가자 및 운영인력 대상 발열 체크 후 고열(37.5℃ 이상), 기침 등 의심환자 발생 인지 즉시, 담당 보건소 신고 및 격리공간 대기 안내
  - 보건소 이송 조치 전까지 의심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는 반드시 마스크(KF94 등급 이상) 착용 및 대화 자제
- 의심환자 발생 시 선별진료소로 신속 이송 지원(이송 후 격리공간은 소독 및 임시폐쇄)
- 화장실 등 공용 시설 소독 및 방역 철저 및 방역수칙 준수 안내
- 참가자 이동 동선 포함 실내외 전 시설 소독
- 기념품 배포처, 카페테리아(휴게 공간) 등 수시 소독 및 관리
- 출입구와 시설 내 각처에 휴지통 비치
- 청소, 보안 등 시설관리 외부업체 종사자의 방역 지침 및 안전교육과 자가진단 관리
  - ※ 행사의 성격, 참여 인원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상기 조치사항 외에 별도의 강화된 추가 방역 조치 시행

### ② 식음료 업장 운영

- 테이블 간, 테이블 내 좌석 간 1m 거리두기 가능하도록 좌석 배치
- 테이블 당 인원을 최소화 하고 가능한 마주보지 않고 개별 식사가 가능하도록 배치
-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투명 가림막 설치
- 수저 및 젓가락 포크 등은 되도록 개별 포장하여 비치하고,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
- 국자·집게·가위·수저통 등 공용 도구 소독 철저
-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정수기, 커피머신, 메뉴판 등은 소독 및 위생 관리 철저



### ③ 냉난방기 사용 할 때

- 냉난방기 등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자주 외부 공기로 환기
-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의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가능한 낮춰서 사용하기

#### | 다중이용시설 내 냉난방기 사용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제4판, '20. 11. 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 5. 27)

- 시설 사용 전과 후에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송풍(최대 풍량 30분 이상)을 가동시켜 냉난방기 내부 및 실내의 오염물질 제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바람 방향은 천정 또는 벽으로 향하게 하고, 바람의 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하기
- 기계환기 설비가 없는 시설에서는,
  - 2시간마다 1회(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곳은 배기팬 등을 이용하여 내부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환기
- 기계환기 설비를 갖춘 시설에서는,
  - 기계환기를 상시 가동하고 2시간마다 1회(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
  - 기계환기는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
- 화장실은 문을 닫고 화장실에 설치된 배기팬을 상시 가동하여 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필터는 기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하기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기
-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 강화
  - 시설 내 소독을 자주(최소 일 1회 이상) 실시
  - 유증상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출입관리 강화

## 3) 참가자

### ① 행사 참여

- 행사장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 작성 및 체온 측정 등 방역 협조
  - 행사 참여 중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37.5℃ 이상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나면 행사 관계자에 즉시 통보 및 격리·이송 조치

- 행사 참가 시 가급적 온라인 사전 등록 및 결제
  - 불가피하게 현장 등록을 하는 경우 비대면 전자 결제 수단 (모바일 페이 등) 준비
- 행사 안내문 및 브로셔 등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하여 준비
- 줄을 서거나 입장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천천히 이동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반드시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수시로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수시로 손 소독제 사용
- 행사장에서 항시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보건용 권장) 착용 및 발언 시에도 마스크 벗지 않기
- 휴게실, 카페 등 다중이용공간은 장시간 이용하지 않고,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
- 저층 이동 시 엘리베이터보다 계단 이용
-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동승자와 대화를 자제하고, 이용 전/후 손소독제 사용
- 체험 및 부대행사 참여 시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 체험 도구 사용 전/후 손 씻거나 손 소독제 사용
  - 행사장 현장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현금보다는 전자 결제방식 이용(모바일 페이, QR코드, NFC 카드, 신용카드 등)
  - 실외 행사 참가 시 가급적 손 소독제 휴대
- 식음료 업장 및 공용 휴게공간 이용
  - 가급적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고, 식사 시 대화 자제
  - 음식물 섭취 전후 손 씻거나 손 소독제 이용
  -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 식사 시, 가능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음
  - 공용 집기류 사용 시 위생 장갑이나 손 소독제 사용
  - 생수, 음료 섭취 시 되도록 개인 컵·물병·텀블러 등 이용
  - 이용자가 많으면 대기하고, 참가자가 밀집한 테이블 이용 자제
  - 야외 테이블이 있는 경우 야외 공간 이용

## ② 숙박시설 이용

- 가급적 숙박은 피하기, 숙박이 불가피한 경우 1인실로 예약
- 타인의 객실에 여러 명이 모여서 모임·활동·식사·음주 등 하지 않기
- 엘리베이터 버튼·문 손잡이·공용 집기류 및 전등 스위치 등을 만진 후 손 소독제 사용
- 객실 내부 수시로 환기
- 사우나, 수영장 등 다중이용공간 방문 및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 시 혼잡 시간을 피해 이용
- 숙박시설 내 식당보다 개인별 룸서비스 이용 권장
- 객실 및 화장실에 비치된 샴푸, 빗, 드라이기 등 공용물품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물품 사용

## ③ 이동 수단에 따른 유의 사항

- 자가용 이용 시
  - 차량 승차 전/후 손 소독제 사용
  - 동승자가 있는 경우 대화 자제 및 수시로 환기
  - 되도록 공간 여유가 있는 곳에 주차
- 대중교통 이용 시
  - 매표 시 되도록 온라인 예매 또는 현장 자동 발매기 이용
  - 열차·고속버스 좌석 예약 시 가급적 옆자리 비워두고 예약
  - 탑승 전/후 손 소독제 사용, 마스크(보건용 권장) 착용 및 대화 자제
  -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동승자와 대화를 자제하고, 이용 전/후 손소독제 사용
- 고속도로 휴게소
  - 주문 및 계산 시 무인 주문 기계 또는 주문 앱 이용
  - 가급적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고, 식사 시 대화 자제
  - 음식물 섭취 전후 손 씻거나 손 소독제 이용
  -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 식사 시, 가능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음
  - 공용 집기류 사용 시 위생 장갑이나 손 소독제 사용
  - 생수, 음료 섭취 시 되도록 개인 컵·물병·텀블러 등 이용
  - 이용자가 많으면 대기하고, 참가자가 밀집한 테이블 이용 자제
  - 야외 테이블이 있는 경우 야외 공간 이용

## 나. 등록 데스크 운영

### 1) 주최자 [행사 수행사]

#### ① 참가자 명찰 형태 및 발급 방법 간소화

- 운영인력과 비대면, 미접촉할 수 있는 무인 등록 시스템 구비
- 가급적 비대면 등록 데스크를 운영하고, 부득이하게 대면 등록 데스크 운영 시 투명 가림막 설치 및 운영인력과 참가자 모두 마스크(보건용 권장) 착용
- 참가자가 행사 전 본인 명찰을 직접 출력하여 지참하도록 유도
- 일반적인 목걸이 형태 비닐 명찰은 지양, 오염 빈도수가 적고 폐기하기 쉬운 형태로 준비 (스티커, 손목 팔찌 등)
- 전자 문진표 작성 관련 사전 안내 및 현장 안내문 부착

#### ② 참가자 이동 및 대기 시 거리 유지

- 참가자 입장 시 밀집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입장시키기
- 이동할 때나 줄을 설 때 등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도록 바닥 스티커 부착 등 안전거리 표시



무인 등록 시스템 운영 및 거리두기 바닥 스티커 부착  
(2020 서울VR·AR엑스포, '20.8.13.)



참가자 이동 및 대기 시 거리 유지  
(2020 서울국제주류박람회, '20.6.12.)

### ③ 방역 관리책임자 지정 및 방역 소독 철저

- 등록 데스크, 출입 관리 요원 등은 수시로 손 소독제(비닐장갑 착용 시 수시로 교체) 사용
- 자체 실정에 맞는 방역 대책 마련·시행
  - 책상 위 투명 가림막 설치, 마스크 미착용 방문객 일회용 마스크 제공, 중앙출입구를 제외한 출입문 폐쇄 등
- 확진자 발생 시 출입자 동선 파악 등에 대비하여 의심환자 파악 보고 및 복무상황에 대한 철저한 기록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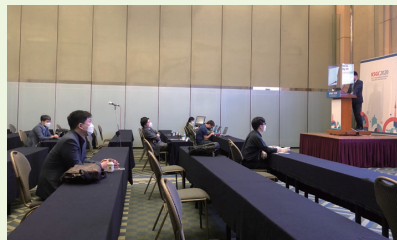
## 다. 국제회의 진행

### 1) 주최자

- 거리 두기를 적용하여, 행사장 운영자와 행사 프로그램에 적합한 행사장 세팅 방안 협의
- 해외 연사 및 참가자 초청은 되도록 자제하고 화상회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참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자재와 시스템 준비
- 행사기간 동안 매일 출입자 명부 작성 및 참가자 2회 이상 발열 점검
- 회의장 내 마스크(보건용 권장) 착용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참가자를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보건용 권장) 착용
-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도록 안내 (밀집도 완화)



등록데스크 투명가림막 설치



회의장 거리두기 좌석세팅 및 연단 투명가림막 설치  
(대한소회기암학회 국제학술대회 IASGO & KSGC 2020, '20.8.21)

## 2) 행사장 운영자

- 출입구 관리 직원은 수시로 손 세정제(비닐장갑 착용 시 수시로 교체) 사용
- 발표자(무대)와 청중석 간 사이에는 최대한 거리 유지(최소 2m)
- 행사 후 소독 및 환기 시행
  - 방역일지 작성(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 청중석, 무대 등 시설은 반드시 소독
- 거리 두기를 적용, 행사 프로그램에 적합한 행사장 세팅
  - ※ 100명 미만의 소규모 미팅 진행 시, 주최 측과 행사장 운영자가 협의하여 정부 방역 지침 사항에 따르는 행사 계획 수립 및 시행

## 라. 전시회 진행

### 1) 주최자

- 전시회 참가자, 운영인력 등 모든 전시장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작성·관리
- 등록신청서(신원 확인) 제출자(4주 보관 후 폐기)만 출입을 허용하고,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확인
- 사전 예약제도 운용 등 시간대별 관람객 수를 제한하여 관람객 집중 방지
-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되도록 개인기기 사용 안내
- 휴게실, 탈의실 운영 시 공용공간은 시차를 두어 사용 안내
- 전시장이 밀집되지 않고 참가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유지되도록 입장 정원 제한
  - 예) 행사장 바닥 면적 4㎡당 입장객 1명으로 제한, 행사장 수용인원의 50%로 입장 정원 제한 등 거리 두기가 가능한 방안 마련

- 전시 참가기업 직원들이 마스크(KF94 등급 이상), 라텍스 또는 일회용 장갑 착용하도록 안내
- 전시 참가기업 직원은 전시 기간 자가 점검표 작성 및 제출, 비말 전파 행위 및 신체접촉 등 감염 유발 행위 금지
- 전시회 개최 전 외국 참가기업 또는 해외바이어 방문 여부 확인
- 전시장 외부에 기업, 제품 홍보 부스(코너)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되,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부스 간에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참석자들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도록 안내
- 참가자들이 전시회 안내책자 및 브로슈어, 프로그램 등의 출력물을 사전에 온라인에서 출력하여 가져오도록 안내
- 전시회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을 활용하여 참가자 유의사항 및 방역조치 등 사전 안내

## 2) 행사장 운영자

- 전시장 출입구 최소화 및 출입자 통제관리
  - 전시회 참가자 및 운영인력 등 모든 전시장 출입자는 체온 측정 및 전자출입명부 확인 후 입장
- 출입구/전시장 내부 방역
  - 전문 방역업체 소독
  - 출입구와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
- 전시 참가기업 중 외국 참가기업(바이어 포함) 참여 여부 확인
- 전시행사 전·중·후 소독 및 환기 시행(일시, 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하기
- 입장 대기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등록 데스크 및 입구 바닥 유지선 설치
- 출입절차 준수 여부 확인
  - 손 소독 및 마스크(보건용 권장) 착용 안내

- 비닐장갑 배부 및 착용 권장, 문진표 작성 안내
- 열화상 카메라 및 안면인식 체온기기 등 설치·운영 지원
- 체온 측정(37.5℃ 이상자 2회 측정)
- 전시장 내부 활동 시 접촉 최소화
- 부스 및 편의시설 내 개인 간격 유지
  - 상담공간 아크릴 차단막 설치 권장
  - 카페테리아 등 편의시설 구성 시 개인 간격 고려 의자 설치
  - 참가자 대상 경품이벤트, 시식 행사 등 운영자제 안내
  - 참가업체 상담 및 안내 시 마스크 착용
- 부스 내 손 소독제 비치
- 외부 공기 상시 유입 및 2시간 간격 공기 질 측정
- 휴게실 및 모유 수유실 분산 이용 안내



참가자 입장 시 열화상 카메라, 체온계 발열 체크 (2020 서울국제주류박람회, '20.6.12.)



전시장 내 편의시설 아크릴 칸막이 세팅

전시장 내 컨퍼런스 공간 세팅

(2020 서울VR·AR엑스포, '20.8.13.)



- 방역 폐기물 수거함 별도 비치(각 출입구 앞)
- 전문 방역업체 활용 주기적으로 전시장 소독 및 폐기물 처리
- 행사 기간 중 종합상황실 운영
  - 주최측과 공동으로 구축한 비상연락망 및 대응계획에 따라 운영
- 시설 종사자(안내 및 보안, 청소, 시설관리 등) 대상 감염병 질병정보 및 예방수칙,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안내
- 마스크(보건용 권장) 착용 및 종합상황실 근무자 등은 수시로 손 소독제 사용(비닐장갑 착용 시 수시 교체)

## 마. 전시회 바이어-셀러 상담

### 1) 주최자

- 되도록 영상, 전화 등 비대면 방안 활용
- 대면 진행 시 환기가 쉽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진행 장소로 확보
-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크릴 칸막이 등 활용 고려
- 전시회 참가업체와 바이어는 상담 시 악수 및 포옹 등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밀폐된 공간을 피하며 마스크(보건용 권장) 착용 후 상담 진행하도록 수시 안내
- 외국 업체, 해외 거주민 등의 국내 초청 자제
- 상담에 참여하는 사람들(바이어, 참가기업 직원, 통역사 등)은 모두 마스크(보건용 권장) 착용
- 상담 진행 중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고, 생수 및 다과 제공 시 일회용 컵과 용기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로 제공



전시장 내 상담테이블 아크릴 칸막이 세팅 (AIPC-ICCA-UFI Good Practice Guidance, '20.5.20.)

## 2) 행사장 운영자

- 참가자가 수시로 사용하도록 전시장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
- 상담 참석자 간의 간격은 2m,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 유지
- 상담회 일정 종료 후 충분히 환기하고 상담 테이블, 좌석 등 시설은 반드시 소독
- 상담 진행 시 마스크(보건용 권장) 착용 수시 안내

## 바.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 방안

### 1) 주최자

#### ① 의심환자 발견 시

- 행사장에서 의심환자 발견 시 담당 보건소에 즉시 신고
  - (감염병 의심 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 경과도 있을 수 있음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KF94 등급 이상)를 착용하도록 하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KF94 등급 이상) 착용
- 임시 격리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보건소 지시 사항에 따라 수행(즉시 진료를 받도록 선별진료소에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이송)
- 이송 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KF94 등급 이상)를 착용하도록 함
- 이송 후 소독제를 사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 청소 및 환기

● 행사 기간 중 참가자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 메시지 전달

-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 안내

● 의심환자 관리 및 이송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수행

- 개인 보호장비를 갖춘 숙련된 인력이 환자 관리
- 환자 이송 시 구급차 및 숙련된 인력이 담당
- 접촉자 조사 즉시 시행
- 의심 및 확진 환자의 역학적 정보 보고

② 확진 환자 발생 시

- 행사장에서 확진 환자<sup>6</sup> 발생(방문 포함) 사실 확인 즉시 해당 사실을 시설 내 근무자에게 통보
- 소속 근무자 외에 시설 내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직원,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 등에게도 반드시 통보
- 방역상 조치, 군중 혼란 등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자들과의 협의 후에 행사를 중단하거나 연기

③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보건소의 검사 및 역학조사 전까지 행사장 내의 격리 장소에서 개인 보호구(KF94 등급 이상 마스크 등) 등을 착용하고 대기
- 보건소의 확진 환자 사례 조사 또는 접촉자 범위 조사 등에 적극 협조

6 임상 양상과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시설 내 근무자, 방문고객 등이 확진 환자로 확인된 경우 포함)

#### ④ 확진 환자의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 역학조사 결과 확진 환자의 접촉자로서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선정된 자<sup>7</sup>는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 | 확진 환자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시 고려 사항 |

(서울시 코로나 19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 등 조치사항, '20.3.7.)

-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  
→ 자가격리 대상으로 선정된 접촉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
-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불명확한 경우**  
→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된 접촉자 이외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확진 환자와 동일 시·공간에 머물렀다고 예상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높은 사람 등) 중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담당 보건소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2) 행사장 운영자

### ① 의심환자 및 확진 환자 발생 시

- 시설 내 전체 근무자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작업장 대기 또는 이동 금지 등 상호 접촉 자제
- 행사 주최기관으로부터 신고 접수 후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의심환자를 격리공간에 격리
- 보건소 혹은 선별진료소 등으로 신속히 이송하도록 지원한 후, 주최 측과 함께 접촉자 파악 및 연락처 확보 시행  
- 이송 이후 격리공간은 소독을 시행하고, 완료될 때까지 임시폐쇄
- 소속 근무자 외에 시설 내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직원,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 등에게도 반드시 통보

<sup>7</sup> 담당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를 기초로 접촉자의 구분은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

### ② 확진 환자 발생 시 행사장 관리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폐쇄, 일반인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 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폐쇄 등의 범위는 확진 환자의 발생 규모,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반드시 시설 전체를 폐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③ 확진 환자 발생 시 시설 폐쇄 등의 범위

- 구체적인 시설 폐쇄 범위 및 조치는 보건당국이 확진 환자 발생 규모(1명/복수) 및 역학 조사 결과 이동 경로(명확/불명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서울시 코로나 19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 등 조치사항, '20.3.7.)

발생 규모	이동 경로	시설 폐쇄 범위
1명 발생 (방문 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 해당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폐쇄
	• 이동 경로 불명확	→ • 확진 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사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폐쇄
복수 발생 (방문 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 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폐쇄 ※ 중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 이동 경로 불명확	→ •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 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폐쇄 검토 •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폐쇄

### ④ 확진 환자 발생 시 시설 폐쇄 등의 기간

-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소독을 위해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소독 후 충분히 환기한 후 시설 사용 재개 권고
- 시설 폐쇄 등의 기간은 폐쇄의 목적,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며 충분한 환기 조치 후 시설의 재개 가능(통상 24시간 이내)
- 다만, 소독 이외의 추가 방역 조치를 위해 시설 폐쇄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설의 사용 재개 기간 설정 가능
  - 오염 원인이 공조 시설 등 환경적 요인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 교체 등

**| 시설 폐쇄 등 조치사항 사례 |**

(서울시 코로나 19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 등 조치사항, '20.3.7.)

- ① **확진 환자 동선 파악 후 접촉자 없어 정상 진료(세브란스병원, '20.2.29)**  
 → 병원 측은 CCTV 등을 통해 확진 환자가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이용해 3번 이상 손을 닦았으며, 2m 이내에 접촉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  
 → **확진 환자 동선 분석 등을 통해 특별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 정상 진료 시행**
- ② **확진 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내 시설은 정상 가동(반도체 공장, '20.2.29)**  
 → **사업장 내 구내식당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구내식당은 폐쇄방역 조치 후 사용 재개 ('20.3.2)하고 확진 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내 생산설비는 정상 가동**
- ③ **확진 환자가 방문한 시설 위주로 철저히 방역 조치(스타필드 시티, '20.2.27)**  
 → **쇼핑몰을 방문한 확진 환자가 2층·3층 매장 및 5층 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한 후, 해당 3개 층을 24시간 폐쇄 후 중점 소독시행**



**⑤ 확진 환자 발생 시 시설 소독**

- 시설 관리자는 확진 환자 동선 파악 후 소독 범위 결정 및 계획<sup>8</sup> 수립
  - 소독 범위에 따른 인력 배치, 소독제 선정, 시설(구역)별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절차 및 방안 마련
  - 환자가 이용한 공간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을 폐기할 것
- 소독은 1회 실시(감염병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되 충분히 소독하며, 전문 방역 업체에 위탁 가능
-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구체적인 업무 지침 및 감염병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독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 또는 전용으로 사용
  - 소독 시 필요한 갈아입을 옷,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양동이, 일회용 천(타올), 물,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소독제, 대걸레 등 준비
  - 오염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소매 가운, 고글(또는 안면 보호구), 장화 등 추가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마스크(KF94 등급 이상)와 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 시 얼굴(눈·코·입)을 만지지 말 것

**8**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 예상지점(근무 장소, 출입문 손잡이, 화장실, 복도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

- 소독제는 감염병용 환경부 승인 소독제를 선택하고, 제품별로 사용량·사용 방법·주의 사항 준수 필요
- 보고·회의는 전화와 온라인 활용 또는 참석자 수 최소화
- 시설 관리자는 확진 환자 추가 발생 대비 업무계획 수립·추진
  - 감염자에 대한 보수·휴가 규정, 회복 후 업무 복귀 절차 등 마련

### 3) 참가자

#### ① 의심환자 발생 또는 증상 의심 시

-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나면 행사 참가를 즉시 중단하고 귀가
- 3~4일 정도 자가격리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경과를 지켜보기
- 주변 사람과 만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안에서 가족과의 접촉 또한 최소화
- 진료 및 휴식 후 증상이 없으면 일상으로 복귀하고, 증상이 심해지면 담당 보건소 또는 전화상담실(☎02+120, ☎1339)에 전화 문의 후 안내 따르기

#### ② 확진자 발생 또는 확진 시

- 확진 환자와 접촉했거나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참가자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조치 전까지 별도의 격리 장소에서 대기

#### ③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 감염병 확진 검사 등을 실시 협조·지원
-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역학조사, 거주 공간 방역(소독) 협조
  - 중앙방역 대책본부 소독 안내 지침에 따라 소독시행 및 사용 재개
-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확진 검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협조·지원
  - 입원, 자가격리 또는 격리 해제 등

### 3. 행사 종료 단계

#### 1) 주최자

##### ■ 사후 정보 관리

- 행사 중 모니터링 했던 참가자 및 관계자 문진표 결과를 중심으로 유증상자 유무에 대한 결과 보고 작성하여 관계자들과 공유
- 유증상자 발생한 경우, 처리 절차 및 방역당국 협조사항을 결과보고로 작성
- 행사 참가자들에게 행사 후 2주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귀가 후 준수사항 및 감염병 의심증상 발현 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

##### ■ 해외 참가자 중 의심환자 및 확진 환자 발생 시

- 방역당국의 절차에 따라 해당자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역 지원
- 의심환자의 격리시설 입소 및 확진 환자의 의료시설 이용 후 거주 국가로 귀국할 때 까지 필요한 사항(통역, 국내체류비, 차량 등) 지원(인적, 금전적 범위에 대해 해외 참가자와 사전 협의 필요)
- 환자 접촉자에게 즉시 통보 및 방역당국의 안내에 따르도록 조치
  - 환자 접촉자가 해외 참가자이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자가격리 시설이용 및 거주 국가로 귀국할 때까지 필요한 사항 지원(인적, 금전적 범위에 대해 해외 참가자와 사전 협의)

#### 2) 행사장 운영자

- 행사 종료 후 정기적으로 시설 환기 및 소독
- 행사장 출입자 모니터링 결과 사항 방역 당국에 보고
  - 감염병 의심환자(유증상자) 발생 시 2주간 모니터링 및 결과 확인 후 2차 보고



- 감염병 의심환자(유증상자)가 확진자로 판명될 경우,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 체제로 전환하여 대응

### 3) 참가자

- 행사 종료 후, 대중교통 이용 시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준수하여 이용
- 참가자 간 소모임 및 회식 등을 자제하고 일찍 귀가
- 귀가 후 목욕 및 외출복 세탁하기
- 행사 참가 후 2주 안에 증상이 발생하여 감염병 진단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즉시 행사 주최자와 담당자에게 전달
- 행사 참가 후 2주간 주최 측 문자 메시지나 보건당국의 확진자 발표 상황을 주시하며 참가한 행사의 확진자 발생 여부 확인



# PART 3



## 부록

붙임 1. 서울 MICE 행사 점검표(주최자/행사 수행사용)	46
붙임 2. 서울 MICE 행사 점검표(행사장 운영사용)	48
붙임 2-1. 행사장 방역수칙 준수 이행 점검표	
붙임 2-2. 행사장 일일 방역 일지	
붙임 3. 서울 MICE 행사 점검표(참가지용)	52
붙임 4. '코로나 19 감염증' 및 감염병 의심자 정의	53
붙임 5. 감염병 예방 개인방역 5대 중요 수칙	54
붙임 6. 해외입국자 참가 절차 및 관리 방안	55
붙임 7. 확진·의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시 행동요령	60
붙임 8.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연락처	61
붙임 9.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연락처	62

## 붙임 1\_ 서울 MICE 행사 점검표(주최자/행사 수행사용)

〈준비단계〉	예	아니오
<b>1. 위험요인 평가</b>		
꼭 개최되어야 하는 행사인가? (일회성 행사 여부)		
온라인으로 전체 혹은 일부 개최할 수 있는가?		
참가인원 대비 협소한 공간에서 하는 행사인가?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행사인가?		
야외행사이나 참가자가 밀집해야 하는 행사인가?		
야외행사 프로그램에 노래, 응원, 구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다수의 영유아, 임산부, 65세 이상 어른이 참여하는가?		
<b>2. 감염병 예방 및 위기 대응</b>		
사전답사를 통해 행사장의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는가?		
행사 이해관계자들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는가?		
방역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였는가?		
행사장 관할 자치구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핫라인을 개설했는가?		
주요 행사장 및 주변 지역 진료장소를 확인하였는가?		
의심환자 발생 대비 격리장소를 확보하였는가?		
격리공간은 독립적이며 밀폐되었는가?		
격리공간 인근에 의심환자 전용 화장실이 있는가?		
개인 보호구를 확보하였는가?(보건용 마스크, 소독제 젤, 비닐장갑 등)		
행사장 방역 계획에 맞는 장비를 준비 혹은 행사장 운영자(장소 제공자)가 설치하였는가? (체온계, 열화상 카메라, 소독 게이트 등)		
행사장 내 충분한 비누,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가?		
행사장에 감염병 예방 안내물을 부착하였는가?		
사전 등록자 대상으로 감염병 의심환자인 경우, 방문 자제를 권고하였는가?		
등록자 대상으로 행사 참가 14일전부터 자가진단을 하도록 안내했는가?		
참가자 및 행사 관계자(종사자 포함) 등 모든 출입자 대상 전자문진표, 개인 정보 수집 동의서 등 방역 관련 문서를 준비하였는가?		
행사운영 인력(종사자 포함)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했는가?		
참가자 혼잡도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는가? (출입구 동선 분리, 거리 두기 좌석배치, 시간대별 인원 제한 등)		

해외 참가자에게 감염병 예방수칙을 설명했는가?		
행사장 내 자주 접촉 시설에 대한 소독여부를 행사장 운영자(장소 제공자)와 확인했는가? (출입구 손잡이, 난간, 화장실 등)		
회의실, 전시장, 식당 등 모든 행사 공간에 물리적 거리 두기 표시 및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둔 좌석 배치를 하였는가?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는가?		
참가자가 등록증(명찰 등), 행사 관련 안내홍보물 등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오도록 안내했는가?		
<b>&lt;개최단계&gt;</b>	<b>예</b>	<b>아니요</b>
행사 기간 주기적으로 개인위생 준수 및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 및 안내를 하는가?		
행사장 출입 시 발열체크,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 확인하는가?		
참가자 전자문진표 작성이 이루어지는가?		
참가자에게 전자문진표 작성이나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출입제한이 있음을 안내하는가?		
행사장 및 시설에 대해 주기적 소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가?		
행사장 운영자(장소 제공자)가 행사장을 주기적으로 환기하는지 확인하는가?		
입구, 출구 동선을 분리하여 운영하는가?		
휴게실, 카페, 네트워킹 라운지 등 다중 이용공간이 밀집되지 않도록 안내하는가?		
부대행사 운영에 따른 주의사항을 실천하는가? (소규모 운영, 경연대회/설명회 자제, 시식 자제, 기념품 배포 자제 등)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가?		
비대면 등록 시스템을 도입했는가?		
거리 두기를 적용하여 입, 출입을 관리하는가?		
마이크는 1인 1개 마이크를 쓰도록 하는가?(혹은 사용자별 마이크 커버 교체)		
식음료 제공 시 뷔페를 제공하는가?(코스 메뉴 또는 도시락 제공 및 개인 텀블러 사용 권유)		
방역관리 담당자는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을 주기적으로 행사 운영인력에게 교육하는가?		
격리공간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관리하는가?		
<b>&lt;행사 후 단계&gt;</b>	<b>예</b>	<b>아니요</b>
행사 후 행사장 및 관련 시설 소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했는가?		
행사 참여자 대상 의심 증상 발현 시 주최 측에 통보하도록 방역관리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안내하는가?		
행사와 관련된 각종 뉴스를 모니터링 하여 대응하는가?		

※ MICE행사 주최자 및 수행사의 행사 점검표는 행사의 성격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사장 운영자(장소 제공자)와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붙임 2\_ 서울 MICE 행사 점검표(행사장 운영자용)**

〈준비단계〉	예	아니오
<b>1. 협조체계 구축 및 시설 방역관리</b>		
주최측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위기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였는가?		
행사 시작 전 행사장 소독을 시행하였는가?(출입구 손잡이, 난간, 화장실 등 포함)		
주최자와 협의하여 방역/안전 필요 물품을 준비하였는가?(손 소독제, 비누, 발열체크기)		
의심환자 발생 대비, 독립적이며 밀폐된 격리 공간을 준비하였는가?		
<b>2. 행사 운영인력 및 종사자 예방 교육</b>		
행사장에 감염병 예방 안내물을 부착하였는가?		
행사운영 인력(종사자 포함)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했는가?		
전시 참가기업 중 외국 참가기업(바이어 포함) 참여 여부를 확인했는가?		
〈개최단계〉	예	아니오
<b>1. 행사장 관리</b>		
방역관리자가 있는가?		
행사장 출입구에서 방문자(참석자)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는가? - 전자 출입명부 등		
행사장 출입 시 발열체크,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는가?		
참가자에게 전자문진표 작성이나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출입제한이 있음을 안내하는가?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자, 발열 또는 유증상자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가?		
종사자와 이용자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가?		
행사장 및 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소독하는가? (최소 1회/일)		
전시장 내 모든 행사 공간에 물리적 거리 두기 표시 및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가?		
출입구와 시설 내 각처에 소독용품(손소독제, 비누 및 필요 시 방역소독게이트 등)을 비치하는가?		
입구, 출구 동선을 분리하여 안내하는가?		
행사장을 주기적으로 환기하는가?		

실내 행사 에어컨 사용 시 이송 수칙을 지키는가?		
청소, 보안 등 시설관리 외부업체 종사자의 안전교육과 자가진단을 관리하는가?		
행사 종료 후 방역일지를 작성하는가?		
<b>2. 회의장 운영 시</b>		
출입구 관리 직원은 수시로 손소독제(비닐장갑 착용 시 수시 교체)를 사용하는가?		
발표자(무대)와 청중석 간 거리(최소2m)를 유지하는가?		
행사 전, 후 소독 및 환기를 시행하는가?		
거리 두기를 적용하여, 행사프로그램에 적합하도록 행사장을 세팅하는가?		
<b>3. 전시장 운영 시</b>		
전시장 내부 활동 시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는가?		
부스 및 편의시설 내 개인 간격을 유지하도록 설치하는가?		
부스 및 상담장 내 손소독제를 비치하는가?		
내부에 있는 이용자 및 운영자에게 마스크 착용에 대해 안내하는가?		
휴게실 및 모유 수유실 등 다수 이용 시설을 분산 이용하도록 안내하는가?		
방역폐기물 수거함을 별도로 비치하고 전문 방역업체가 전시장을 소독하는가?		
<b>4. 음식 제공 시</b>		
참가자가 밀집하지 않게 식사하도록 준비하는가?		
커피잔, 포크, 접시, 젓가락, 집게, 가위, 수저통 등 공용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수저, 젓가락 등은 개별 포장하여 준비하는가?		
<b>&lt;행사 후 단계&gt;</b>	<b>예</b>	<b>아니오</b>
행사 후 행사장 및 관련 시설 소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했는가?		
행사 참여자 대상 의심 증상 발현 시 보건당국의 지시에 맞게 대응하는가?		
행사 참여자 대상 의심 증상 발현 시 해당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시설 소독 계획을 세워 수행하는가?		
행사 참여자 대상 의심 증상 발현 시 시설 폐쇄 등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대응하는가?		
출입자 모니터링 결과 사항을 방역 당국에 보고했는가? - 발열 자 발생 시 2주간 모니터링 및 결과 확인 후 2차 보고 - 발열 자가 확진자로 판명될 경우,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 체제로 전환하여 대응		

※ MICE행사 행사장 운영자의 점검표는 행사의 성격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최자 및 행사 수행사와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PART 3.

붙임 2-1\_ 행사장 방역수칙 준수 이행 점검표(행사장 운영자용)

확인 사항	확인 결과 (○/X)	비고
1. 출입구에서 방문자(참석자) 명단 작성 관리 여부		
2.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여부		
3.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 있는 자, 발열 또는 유증상자 출입금지 여부		
4.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5.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6.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7. 최소 1회/일 이상 시설 소독 여부		
8. 시설 외부(야외)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여부		
9.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여부		
10. 출입구와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여부		
기타사항		

점검 일자 2021.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방역관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붙임 2-2\_ 행사장 일일 방역 일지(행사장 운영자용)

일일 감염병 예방조치 현황 기록							
행사명							
일시				방문자 수			
주차한 차량 수				증상자 수			
안전 조치에 관한 주요 사항 점검표							
항목		예	아니요	항목		예	아니요
예 방	• 방문객 체온 측정은 올바르게 시행되었습니까?			예 방	• 방문객들은 위생 지침을 받았습니까?		
	• 장비가 제대로 작동했습니까?				• 모든 소독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되었습니까?		
	• 마스크가 없는 사람들은 출입이 금지되었습니까?				• 의료 센터와의 연락체계는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까?		
	• 증상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한 대응 조치가 적절했습니까?				• 전시자와 방문자에 대한 통제는 잘 관리되었습니까?		
	• 보급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었습니까?				• 일정에 따라 소독을 했습니까?		
증상자 발생	• 증상자 발생 시 안내서에 따라 진행하였습니까?			확진자 발생	•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까?		
	• 증상자 발생 시 방역 당국과의 협조가 원활하였습니까?				• 확진자 발생 후 후속 조치를 시행하였습니까?		
비고							

## 이후 계획

작성 일자 2021. . .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붙임 4\_ ‘코로나 19 감염증’ 및 감염병 의심자 정의

### ■ 코로나 19 감염증 사례 정의

#### (법적 근거)

- 코로나 19는 임상 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 ① 확진 환자(Confirmed cas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 ② 의사 환자(Suspected case)

- **확진 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 19 임상 증상이 나타난 자

#### ③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PUI 1)
-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PUI 2)
-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PUI 3)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 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 안내는 사용승인 허가 후 별도 공지)

### ■ 감염병 의심자 정의

※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 2호, 2020.3.4. 시행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 환자 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 \* **접촉자의 구분**은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 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
- \*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자 외에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음
- 검역법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 관리지역 또는 중점 검역 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9-3판(‘20.11.10.)

## 붙임 5\_ 감염병 예방 개인방역 5대 중요 수칙

### (제1수칙)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 모든 실내 및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제2수칙)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고 집에서 쉽다

### (제3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 (제4수칙) 최소 1일 3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항상 열어두고,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오전·오후 각 2회 이상) 환기 합니다.
- 소독을 할 때는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품을 사용하고,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준수(용량과 용법 등)하여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 (제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고 영상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 할 기회를 만듭니다.



## 붙임 6\_ 해외 입국자 참가 절차 및 관리 방안

### ■ 대상

-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

### ■ 관리 기준

- 증상별(유증상·무증상), 국적별(내국인·외국인), 외국인 체류기간별(장·단기), 격리 면제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 해외입국자(승무원 제외) 전수 진단검사 실시

### ■ 세부 방안

- ◎ 해외 입국자(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는 검역 단계에서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단계에서 관리(능동감시 포함)
- ◎ 해외 입국자 중 인천공항 외 공항으로 입국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에서 14일 동안 시설격리
- ◎ 항만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 선원 등은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 \* 단, 본국 귀한 목적으로 하선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지자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시설격리 중 출국 희망 시 허용, 선사나 해운 대리점 등을 통한 이동수칙 준수 안내 및 출국 확인
  - \* 인천공항 외 공·항만을 통해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 중 시설격리가 필요한 자의 명단은 담당 검역소에서 검역소 관내 시도로 공유
- ◎ 격리면제대상자는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설치하여 코로나바이러스19 임상증상 모니터링

### ■ 진단검사

- ※ 격리 기간에 코로나 19 임상 증상 발현 시에는 즉시 진단검사 시행

#### ◎ 모든 입국자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3일 이내 실거주지 담당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시행
- 단기 체류 외국인(항만 선원 제외)은 입국 후 3일 이내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에서 진단검사 시행

- ※ 단, 인천공항 입국자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하고, 항만 선원의 경우 필요시 검역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 지자체에서 격리 해제 등 필요할 때

-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 14일 이내 추가검사 시행 권고

※ 외국인 중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지자체에서 외국인의 인적 사항, 위반사항 등을 중앙방역 대책본부로 공문 통보

■ 증상별 조치

◎ 유증상자 조치

- 해외발 입국자 중 검역 단계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진단검사 실시

- 검사 결과 양성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 검사 결과 음성 :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인 자가격리(14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를 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인 시설격리(14일,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 앱 미설치자는 특별검역신고서 입력

◎ 무증상자 조치사항

- 격리자 관리 : 입국자(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일 이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 (14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 단, 영국·남아공·브라질 발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 시설에서 검사 후 자가 격리 실시

- 입국자 중 무증상의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동 시설에서 격리(14일,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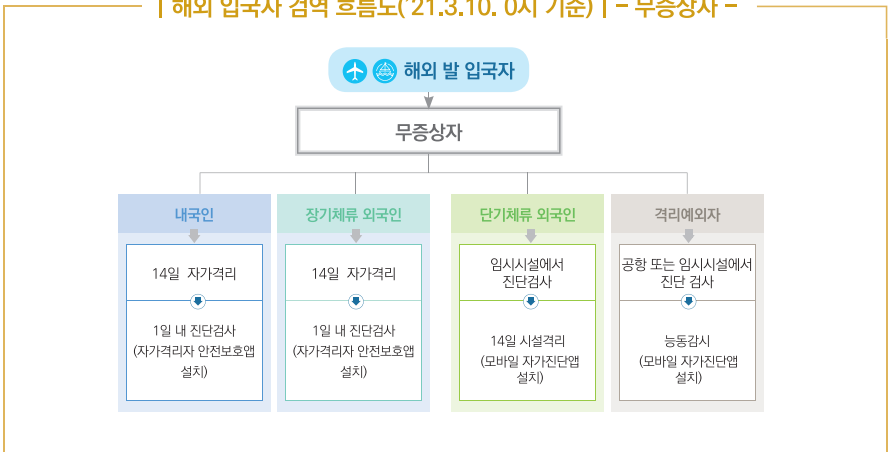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 10판('21.05.17.)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웹사이트 해외입국자 방역관리방안 참조



| 해외 입국자 검역 흐름도('21.3.10. 0시 기준) | - 유증상자 -



| 해외 입국자 검역 흐름도('21.3.10. 0시 기준) | - 무증상자 -



※ 격리기간 : 입국일로부터 만14일이 되는 날(입국일+14)의 12:00까지 격리  
 (예를 들어 6월1일 입국한 경우 만14일이 되는 15일의 12:00까지 자가격리 의무기간으로 통보)

※ 대한민국 방역체계 중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수소송본부)



**| 격리면제 대상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 대응 지침(제10-1판), '21. 7. 5.)


- ①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의 경우
  - \* SOFA협정 적용자로 주한미군(A3)과 그 관련자는 미측 자체 격리
- ②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을 받은 경우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학술·공익적 목적(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의 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 장례식참석 인도적 목적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례식 참여로 한정)
  - 직계존비속 방문 인도 적 목적(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에 한함)
  - 공무국외 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공무출장명령서와 '격리 면제서' 소지 필수, 출장지에 대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출장 명령서 소지로 대체)
- ③ 항공기 승무원, 객실승무원 외 탑승정비사, 화물정비사(GD지참)
- ④ 부정기편 운항에 필수적인 현지 지정 파견자(출장품의서, 항공사 ID카드 지참)
- ⑤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 백신접종 후 2주 경과 뒤 출국 ▲무증상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등 유행국가 꺾입국자가 아닐 것

**| 격리면제서 소지자 입국 안내 |**

\*해외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 사항 참조

■ 각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된 「격리면제서(Isolation Exemption Certificate)」를 소지한 내·외국인 입국자(이하 '입국자')는 대한민국 입국 시 코로나19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하여 아래의 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 ① 입국자는 항공기 출발 전까지 대사관(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이를 입국심사대에서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입국자는 입국심사대에서 받은 노란색(연두색) 목걸이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합니다.
- ② 입국자는 입국 직후 공항 내 선별진료소(9:00~19:00) 또는 임시생활시설(19:00~9:00)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 \* (대기안내) 입소 시 시설요원의 지시에 따라 입소자 명단 작성, 지정된 대기 장소(방) 내에서 대기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국내 체류지로 이동 가능
- ③ 입국자는 보건복지부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입국 다음날부터 14일 간 자신의 건강상태(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유무)를 매일 입력해야 합니다.

자가진단앱 설치안내	QR 코드		인터넷 주소	<a href="http://ncov.mohw.go.kr/selfcheck/">http://ncov.mohw.go.kr/selfcheck/</a>
---------------	----------	---	-----------	---

- ④ 입국자는 입국 다음날부터 14일 간 능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 방역당국 담당자는 매일 1회 이상 전화로 입국자의 건강상태 및 증상유무를 확인하고 입국자는 이에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 \*연락처 또는 체류지 변경 시 자가진단앱 콜센터(02-6360-0900)로 반드시 신고
  - 특히 입국자가 연속 2일 이상 방역당국 담당자와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 확인 대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 행정사항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
  - 현행 : (1단계) 복귀 유도 → (2단계) 고의 이탈 복귀 거부 시 고발 조치
  - ⇒ 강화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One-Strike Out)

###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 ▶ **내국인 : 벌금 1천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금 배제(행안부)
  - 이탈자에 코드 제로 적용(경찰) - 손해배상 청구 검토(법무부)
- ▶ **외국인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거부자는 강제 출국 조치(법무부)**



- 추가 강화 조치(4. 27.부터 시행)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본인 동의에 따라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과 연동되는 안심 밴드를 착용하게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로 격리 조치 변경 통지
  - ※ 격리 조치 위반자가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의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시설격리 조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이용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붙임 7\_ 확진·의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시 행동요령**

**시설 내 확진 환자, 의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해당 근무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보건당국에서 시설 내 조치 전까지 대기)



담당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전화상담실 **1339**로 즉시 신고



시설 내 **상황 전파**(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방문고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포함)



시설 내 **전체 근무자 개인위생 관리**(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및  
**작업장 대기 또는 이동 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확진 환자 또는 의사 환자와 접촉하거나**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근무자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조치 전까지 별도의 **격리 장소**에서 대기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역학조사, 사업장 방역**(소독\*등), **감염병 확진 검사** 등을 실시 **협조·지원**  
\* 중앙방역 대책본부 소독 안내 지침에 따라 소독시행 및 사용 재개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확진 검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시행 **협조·지원**  
\*입원, 자가격리 또는 격리 해제 등

※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서울시, '20.03.07.)

붙임 8\_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연락처

[지침 관련 실무 연락처]

목차	업무	부서	연락처
대응체계	대응 총괄	중수본 방역총괄팀	044) 202-1751, 1752
		방대본 총괄조정팀	043) 719-9371, 9373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관련	감염병정책총괄과	043) 719-7116
사례 및 감염병 의심자 정의	사례 정의	방대본 환자관리·지침팀	043) 719-9329
	진단 검사비 지원	방대본 진단검사운영팀	043) 719-7266
감염병환자 신고·보고 체계	확진자 발생 및 사망 신고·보고	방대본 상황관리팀	043) 719-7789, 7790, 7878, 7979
		방대본 환자관리·지침팀	043) 719-9317
해외입국자 관리강화	검역단계 조치사항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	043) 719-9207
	검역단계 확진자 병상배정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	044) 202-1791, 1792
	격리면제자 관리방안	중수본 해외입국관리팀	044) 202-1806
확진환자 대응방안	격리통지서	방대본 격리관리팀	043) 719-9334, 9335
	생활치료센터 입소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	044) 202-1782, 1783
	자가치료	방대본 환자관리·지침팀	043) 719-9344
	확진환자 격리해제	방대본 환자관리·지침팀	043) 719-9347
	역학조사 전반, 사례조사, 접촉자 조사	방대본 역학조사팀	043) 719-7977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방대본 격리관리팀	043) 719-9334, 9335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관리	방대본 환자관리·지침팀	043) 719-9123
	병상배정, 전원 등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	044) 202-1791, 1792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의사환자 대응방안	방대본 환자관리·지침팀	043) 719-9131
사망자 관리	사망자 장례 관리	방대본 환자관리·지침팀	043) 719-9329
	장례비용 지원	방대본 환자관리·지침팀	043) 719-9137
	장사시설 관리 및 방대본 협업체계	중수본 장례지원팀 (노인지원과)	044) 202-3473, 3471
실험실 검사 관리	진단 검사 관리	방대본 진단총괄팀	043) 719-7842, 7844
자원 관리	병상배정 및 이송 중증 환자 전원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 전원지원상황실 (국립중앙의료원)	044) 202-1791, 1792 1800-3323
질병 개요	정의, 현황, 병원체	방대본 환자관리·지침팀	043) 719-932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 10판, '21.05.17.] 실무 연락처(21.06.16.)

## 붙임 9\_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연락처

##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연락처〉

\*자치구별 가나다순

구분	자치구 보건소	누리집	전화번호
1	강남구보건소	<a href="http://health.gangnam.go.kr/">http://health.gangnam.go.kr/</a>	02-3423-7199
2	강동구보건소	<a href="http://health.gangdong.go.kr/">http://health.gangdong.go.kr/</a>	02-3425-8500
3	강북구보건소	<a href="http://www.ehealth.or.kr">http://www.ehealth.or.kr</a>	02-901-7600
4	강서구보건소	<a href="http://www.gangseo.seoul.kr/site/health/">http://www.gangseo.seoul.kr/site/health/</a>	02-2600-5800
5	관악구보건소	<a href="http://www.gwanak.go.kr/">http://www.gwanak.go.kr/</a>	02-879-7010
6	광진구보건소	<a href="http://www.gwangjin.go.kr/health/index.jsp">http://www.gwangjin.go.kr/health/index.jsp</a>	02-450-1422
7	구로구보건소	<a href="https://www.guro.go.kr/health/index.do#n">https://www.guro.go.kr/health/index.do#n</a>	02-860-2600
8	금천구보건소	<a href="http://bogunso.geumcheon.go.kr/">http://bogunso.geumcheon.go.kr/</a>	02-2627-2114
9	노원구보건소	<a href="http://www.nowon.kr/health/">http://www.nowon.kr/health/</a>	02-2116-3115
10	도봉구보건소	<a href="http://health.dobong.go.kr">http://health.dobong.go.kr</a>	02-2091-4600
11	동대문구보건소	<a href="http://health.ddm.go.kr/">http://health.ddm.go.kr/</a>	02-2127-5365~6
12	동작구보건소	<a href="http://healthcare.dongjak.go.kr">http://healthcare.dongjak.go.kr</a>	02-820-1423
13	마포구보건소	<a href="http://health.mapo.seoul.kr">http://health.mapo.seoul.kr</a>	02-3153-9020
14	서대문구보건소	<a href="https://www.sdm.go.kr/health/">https://www.sdm.go.kr/health/</a>	02-330-1801~2
15	서초구보건소	<a href="http://health.seocho.go.kr">http://health.seocho.go.kr</a>	02-2155-8114
16	성동구보건소	<a href="http://bogunso.sd.go.kr/">http://bogunso.sd.go.kr/</a>	02-2286-7000
17	성북구보건소	<a href="http://www.sb.go.kr/bogunso/">http://www.sb.go.kr/bogunso/</a>	02-2241-1749
18	송파구보건소	<a href="http://ehealth.songpa.go.kr">http://ehealth.songpa.go.kr</a>	02-2147-2000
19	양천구보건소	<a href="http://health.yangcheon.go.kr/">http://health.yangcheon.go.kr/</a>	02-2620-3114
20	영등포구보건소	<a href="http://www.ydp.go.kr/health/">http://www.ydp.go.kr/health/</a>	02-2670-3114
21	용산구보건소	<a href="http://health.yongsan.go.kr">http://health.yongsan.go.kr</a>	02-2199-8012~3
22	은평구보건소	<a href="http://health.ep.go.kr">http://health.ep.go.kr</a>	02-351-8114
23	종로구보건소	<a href="http://www.jongno.go.kr/healthMain.do">http://www.jongno.go.kr/healthMain.do</a>	02-2148-3520
24	중구보건소	<a href="http://www.junggu.seoul.kr/health/">http://www.junggu.seoul.kr/health/</a>	02-3396-6317
25	중랑구보건소	<a href="http://health.jungnang.go.kr/">http://health.jungnang.go.kr/</a>	02-2094-0710

※ 서울특별시 복지 누리집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201455>



# PART 4





---

##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



관련 법령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8조 (역학조사)
  - 제34조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의 수립·시행)
  - 제34조의2 (감염병 위기 시 정보 공개)
  - 제35조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의 수립·시행)
  - 제35조의2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 제37조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
  - 제39조 (감염병 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방법)
  - 제39조의3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 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 제41조의2 (근로자 입원 또는 격리 시 유급휴가 등 사업주의 협조의무)
  - 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제43조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통지)
  - 제43조의2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 제4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 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 제48조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 제49조제3항, 제49조제4항, 제49조제5항 (조치 미이행에 따른 운영중단 및 폐쇄 명령)
  - 제60조 (방역관)
  - 제60조의2 (역학 조사관)
  - 제74조 (비밀누설의 금지)
  - 제74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 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 참고 자료

### 〈자문위원〉

- 경희대학교 컨벤션경영학과 김봉석 교수
- 코엑스(Coex) 김동욱 팀장
-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김석범 팀장
- (주)마이스앤컴퍼니 배득성 대표이사 (서울MICE얼라이언스 PCO 분과대표)
- 엑스포럼 신현대 대표이사 (서울MICE얼라이언스 전시 분과대표)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박희승 팀장
- 한국MICE협회 이슬기 팀장

### 〈국외 문헌〉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3.)
  - Key planning recommendations for Mass Gatherings in the context of COVID-19
  - Mass Gathering Risk Assessment COVID-19 Key Considerations
- AIPC and UFI Good Practices Guidance (2020. 3.)
  -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Health and Safety: Managing COVID-19 Challenges
- AIPC, ICCA and UFI Good Practice Guidance (2020. 5.)
  - Addressing COVID-19 Requirements for Reopening Business Events
- ASM Global's VenueShield and ICC SYDNEY (2020. 6. 10.)
  - ICC SYDNEY EVENTS SAFE OPERATING FRAMEWORK

### 〈중앙정부, 서울시, 국내 유관기관 참고 자료〉

- 행정안전부(2018)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 행정안전부(2020. 6.) 수도권 집단 발생 대응 방안(공지용)
- 보건복지부(2021. 6.)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전체본)
-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2020.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2020. 2. 26.) 코로나-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제2판)
-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2020. 5. 11.)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 시설 소독 안내(제3-2판)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2020. 6.)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 관리자 업무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2020. 7. 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_지자체용(제9-1판)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2020. 7. 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_지자체용(제9-1판) 부록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2020. 11.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_지자체용(제9-3판) 부록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2021. 5. 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_지자체용(제10판)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2021. 3. 10.) 한국 정부 대응체계
- 중앙방역대책본부(2021. 7.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0-1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0. 2.)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제2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0. 5. 27.) 정례브리핑 및 다중이용시설 등 에어컨 사용 수칙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0. 7. 3.)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제3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0. 11. 25.)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제4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1. 7.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_시설별 주요 방역 수칙
- 중앙사고수습본부(2021. 8.)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 문체부-한국관광공사(2020. 5.)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시기 여행 경로별 안전 여행 가이드
- 서울시(2020. 3.) 코로나 19 확진 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 관리 등 조치사항 안내
- 서울시(2020. 6.) SDEX 2020\_현장점검 계획 및 이행점검표
- 서울시(2020. 7. 1.)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및 상황 장기화에 따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위기대응역량 강화 계획
- 서울시(2020. 8. 1.) 코로나19 백서
- 서울관광재단(2019)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 한국전시산업진흥회(2020.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전시회 개최 방역관리 가이드라인
- SETEC(2020. 6.) 전시장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대응계획 1-6
- Coex(2020. 6.) K마이스 K방역을 위한 코엑스 방역 현황
- 전시회 사진 참고: 서울국제주류박람회(2020. 6.), 서울 VR·AR 엑스포(2020. 8.)
- 국제회의 사진 참고: 대한소화기암학회 국제학술대회 IASGO & KSGC 2020 (2020. 8.)

### 〈참고 누리집〉

- 고용노동부 [www.moel.go.kr](http://www.moel.go.kr)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http://www.mcst.go.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http://www.mohw.go.k)
- 행정안전부 [www.mois.go.kr](http://www.mois.go.kr)
- 질병관리본부 [www.kdca.go.kr](http://www.kdca.go.kr)
- 서울특별시 [www.seoul.go.kr](http://www.seoul.go.kr)
- 서울관광재단 [www.sto.or.kr](http://www.sto.or.kr)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http://www.visitkorea.or.kr)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www.akei.or.kr](http://www.akei.or.kr)
- 삽화 참고 [www.freepik.com](http://www.freepik.com)



초판 발행일 | 2020년 8월

개정 발행일 | 2021년 9월

발행처 | 서울특별시

제작기관 | 서울관광재단 \_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85, 5~6층

※ 본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전체본) (2021. 6.)」,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2021. 8.)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시설별 주요 방역 수칙 (2021. 7. 1)」 등을 최신 자료로 인용하였습니다.

※ COPYRIGHT © 2021 SEOUL TOURISM ORGANIZATION  
ALL RIGHTS RESERVED